

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원을 위한 마스크, 세정제 등 수입물품 세관장확인 생략 지침

□ 배 경

- 기업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소속 직원 배포용으로 수입하는 마스크, 세정제 등 의약외품에 대해 수입요건 세관장확인 생략 등 신속통관 지원 필요

□ 세관장확인 생략 지침

○ 적용 대상

-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(무상거래)* 물품 중 마스크, 세정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물품

*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

○ 반입 목적(사유)

- 기업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소속 직원 배포용으로 직접 수입
- * 필요 시 반입목적(사유)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확인서 징구

○ 조치 사항

- 상기 적용 대상과 반입 목적(사유)에 대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확인 생략으로 신속통관 조치

○ 세관장확인 생략 근거

-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호,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,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

□ 시행일 : 2020. 2. 26.

(단, 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되어 통관이 안된 물품도 적용)